사기·배임

[서울중앙지법 2004. 9. 22. 2004고단440, 899, 4435]



【판시사항】

차용용도를 속이거나 투기성이 강한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,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, 구조조정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업성공을 통해 이를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또 그 중 일부를 기존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형법 제347조 제1항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 김병현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심준용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【이유】

】범죄사실

- 피고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피씨케이파트너스(대표이사 공소외 3)의 이사인바,
- 1. 사실은 2002. 4.경 공소외 1·공소외 2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35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테크원의 구조조정작업에 참여하였다가 2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자 그때부터 다시 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고, 피고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가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자신이 주식회사 기린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고율의 이자 지급 및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단기간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신주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2003. 3. 3.

서울 강남구 (행정동 및 지번 생략) 소재 (타워이름 및 층 생략)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, 피해자 공소외 5에게 "3억 원을 빌려주면 2003. 3. 20.경까지 원금과 함께 3부 이자로 900만 원을 주고, 그 담보로 8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권을 제공하겠다.

- "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,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.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(계좌번호 생략)로 293,500,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,
- 2. 광덕물산 주식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조조정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동 사업성공을 통해 이를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또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액을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, 2003. 2. 15.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(타워이름 및 호수 생략) 피씨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, 위 피해 자에게 "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또는 보름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10% 지급하겠다.
- "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,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. 3. 7.경 1억 원을, 같은 달 10.경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(계좌번호 생략)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고,
- 3. 사실은 광덕물산 주식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동 회사의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 7(여, 31세)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주식 매입에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, 제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2003. 3. 24.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, 위 피해자에게 "광덕물산 주식회사가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.

내가 광덕물산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.

- 투자금 입금일이 2003. 3. 24.인데 내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투자하면 1개월 뒤인 2003. 4. 24.까지 투자금 전액과 원금의 20%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.
- "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,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, 바로 당일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(계좌번호 생략)로 1억 3,500만 원을, 공소외 8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(계좌번호 생략)로 1억 4,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 7,500만 원을 편취하고,
- 4. 2003. 2. 6.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기린의 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(대표이사 공소외 9)에게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투자한 후, 같은 해 3. 24. 피해자의 요구로 동인이 지정하는 공소외 10에게 위 투자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'양도채권금액: 금사억원, 양도채권내용: (주)기린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사 대금 반환수령 권한 및 주식교부청구, 주식수령권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 공소외 10에게 양도한다'라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, 같은 해 4. 18.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, 한편 같은 해 7. 7.경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, 한편 같은 해 7. 7.경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로부터 위 투자금 채권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억 6,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, 피해자에게 투자자 명의를 대여해준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인 피해자 또는 동인이 지정한 채권양수인인 위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합의금을 원만히 추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,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0에게 양도한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채권 금액이 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, 2003. 7. 24. 마치 위 공소외 10에게 양도한 채권은 4억 원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1억 6,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마치 피고인 자신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

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공소외 11에게 위 1억 6,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, 그 무렵 채무자인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스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여, 위 공소외 11로 하여금 위 1억 6,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게 함으로써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,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2004고단440호 사건
- 1.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
- 1. 증인 공소외 5·공소외 4·공소외 1·공소외 7의 각 법정 진술
- 1.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·3회 피의자신문조서(공소외 1·공소외 5·공소외 7·공소외 4의 각 진술부분 포함)
- 1.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
- 1.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
- 1. 공소외 4의 진정서
- 1. 차용증서
- 2004고단899호 사건
- 1.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
- 1. 증인 공소외 4·공소외 1의 각 법정 진술
- 1.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(수사기록 제183쪽)
- 1. 공소외 4·공소외 11·공소외 12·공소외 13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
- 1. 투자계약서, 채권양도계약서
- 2004고단4435호 사건
- 1.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
- 1. 증인 공소외 6의 법정 진술
- 1.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
- 1.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(수사기록 제164쪽) 법령의 적용
-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: 형법 각 제347조 제1항(사기의 점), 제355조 제2항, 제1항(배임의 점)
- 2. 경합범 가중 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(사기죄에 가중) 쟁점에 관한 판단
- 1. 판시 제1의 사실: 피해자 공소외 5 및 공소외 1·공소외 4의 각 진술에 의하면,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리면서 8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기린의 신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,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신주권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4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희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인의 담보 및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.
- 2. 판시 제2의 사실: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, 피해자 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,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광덕물산의 구조조정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에 일부 사용한 사실, 광덕물산의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이

- 확실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희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.
- 3. 판시 제3의 사실: 피해자 공소외 7, 공소외 1의 각 진술에 의하면,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당 부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광덕물산의 구주(舊株)를 가지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속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.
- 4. 판시 제4의 사실: 피해자 공소외 4, 공소외 1의 각 진술에 의하면,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프로쉬인베스트먼트홀딩 스에 대한 권리 중 피고인의 몫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일정 지분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피고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. 양형이유
- 1. 유리한 조건
- 초범, 피해자 공소외 5와 합의, 피해자들도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 또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등.
- 2. 불리한 조건
- 피해금액이 9억 원이 넘고,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도 6억 원이 넘으며, 구조조정 사업의 위험부담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범행의 위험성도 크고,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. 판사 강경태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